명의신탁주식을 해소하기 위한 절세 전략

국세청의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법인의 차명주식을 찾아내고 있다. 이제 차명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이 속속 드러날 예정이며 각종 탈세 및 불법 양도와 증여 등의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할 때 언제 발생되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유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발생되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간소한 절차와 입증자료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이 제도는 명의신탁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일 뿐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주식환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3.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4.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5.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01년 7월 24일 이후 차명주식

2001년 7월 24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발생되었다면 명의신탁해지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명의신탁해지는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해야 하고,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간소화 절차와 동일하게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 환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이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유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유는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양도 및 증여의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효율이 좋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해지 및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실패 시 세금을 예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특히 주식수가 많지 않은 경우 시가대로 양도나 증여를 하여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고저가양수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참고하여 시가를 조절하여 실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

주식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이며 더군다나 명의신탁해지 방법까지 어려운 경우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다.

먼저 주식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린 후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기업에 따라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주식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려도 세금(양도세, 증여세)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아래의 다른 방법과 함께 실행해야 하겠다.

1. 선납세금할인제도 활용
2. 소득세법의 채권채무담보제도
3. 주식시장 활용
4. 신탁플랜 활용

신 해법 특징으로는 즉시 실행이 가능하고 세무사 사전검증과 국세청 사후 검증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및 의제배당 가지급금 등이 배제되고, 이익관리, 주식관리, 자금준비가 불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CEO는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02-6969-8918)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http://biz.joseilb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수 안성만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세무사

박병동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명의신탁, 믿었던 가족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P 컨설턴트는 언짢은 기분으로 며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며칠 전 들었던 D 대표의 얘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D 대표는 2000년 초에 양주에 부품소재업체인 OOO 회사를 설립하였다.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있었던 때라서 본인 외 D 대표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처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였다. 주식발행 비중은 '30% : 19% : 30% : 21%'이었다. D 대표는 그 간의 사업에서 실패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D 대표에게 98년 IMF위기는 오히려 기회였다. 그 전에 하던 사업은 IMF를 맞기도 전에 접었다. IMF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이 발생하고, 회사가 생겨나는 시기에 D 대표도 지금의 OOO 회사로 다시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D 대표는 자신의 여러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좀 더 치밀한 준비 끝에 새롭게 부품소재 회사로 다시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렇지만 D 대표는 지금 회사 설립 당시의 판단 미스로 회사 경영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바로 여동생 때문이다. D 대표가 실패할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여동생이었기에 회사 설립당시에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여동생과 처남 명의로 발행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회사가 성장할수록 여동생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개선의 노력도 무용지물 관계는 계속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급기야 여동생은 경영권을 자신이 가지려 하고 있다.

P 컨설턴트는 이러한 상황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오랫동안 만났던 D 대표는 그야말로 진국인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또 한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D 대표가 만일 지금 다시 실패한다면 이제는 재기할 수 없다는 것을 P 컨설턴트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1. 명의수탁자의 변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및 명의수탁 사실 부인 위험 존재
2. 명의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어 환수위험 존재
3.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명의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주식을 압류당할 수 있음
4. 명의수탁주식 정리: 정리하지 않고 미룰 경우 가업승계 시 어려움을 겪게 됨

또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늦출수록 회사가치 상승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할 세액이 커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추징 당할 수 있다. 아울러 명의 수탁자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D 대표의 경우 여동생의 변심이라는 위험을 겪고 있다. 이에 D대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처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을 당시 현금으로 발행하였기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늦출수록 위험은 가중된다. D대표의 가장 큰 위험은 경영권 박탈이다.

P 컨설턴트는 신규법인 설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D대표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D대표와 같은 위험을 가진 주식명의신탁은 실무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오랫동안 컨설팅 해준 경험이 있는 P 컨설턴트와 같은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CEO는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02-6969-8918)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http://biz.joseilb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수 안성만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세무사

정연조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전문가

명의신탁주식을 해소하기 위한 절세 전략

국세청의 세외고 국세행정시스템 NTIS와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하게 됐으며 차명주식을 찾아내고 있다. 이에 차명주식을 보유 중인 업종주 6~8 기대실 제정이며 각종 업계 및 협회 업도과 관련 등의 행위유형에 대한 안내문 대상이 아닌 안내이다.

2004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할 때 언제 발생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2004년 7월 23일 이전에 발생시킨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주의 확인절차 간소화를 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과제척 간소한 절차와 입증자료로 명의신탁주식이 실제소유주 본인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이 제도는 명의신탁주식 입증책임을 납세자는 제도일 뿐 명의수세자에 대한 증거에 납세자임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주식 환원을 해외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주식 및 소유자 확인자료서
2. 증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3.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4. 명의수세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5. 명의신탁자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17년 2월 24일 이후 차명주식

2004년 7월 24일 이후 명의신탁주식에 발생된경우에는 명의신탁에해당하기 가능한 제외 확인이 필요하다. 명의개제부터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해야 하고, 실제 소유자가 증빙제약도 크세요해 이기 때문에 증빙준비를 충분히 한 다. 간소화 절차와 정밀하게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비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이에는 주식 환원을 해외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이 보 공증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유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앞으로 해야 한다. 이 유는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매우이 낮은 경우 많도 및 관여과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조달이 용을 수 있으며, 명의신탁해지 및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시 세금을 예상하기 위해서 설득한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특히 주식수가 많이 많은 경우 시가대로 양도나 증여를 하세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돌려할 수 있으며, 고객 맞춤서비스 및 비상장회계사무실 힘고려에 시가를 조정하여 실행한다면 30% 초일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

주식 평가금액이 높은 경우이면 이것이 명의신탁해지 방법적이 아니라 경우 가장 굉장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주식거래를 큰 폭으로 할수한다 후 당도나 증여세 납부를 고려할 수 있다. 다른 기업에 대주 주식거래를 할수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주식거래를 할수있는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주식거래를 큰 폭으로 할수로서도 세금문제에, 증여세에 부닥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방법과 함께 실행해야 하겠다.

1. 변스테크업인에도 활용
2. 소프세법으로 적극해당인에도.
3. 주식시장 활용
4. 신탁방법 활용

이 제한 특징으로는 주식 실행이 가능하고 세무서 시정조정과 국세청 사후 조정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과정주주 취득세 및 등록세당 가지급금 등이 해제되고, 이익관리, 주식관리, 자금관리이 필요없다.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전문적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CEO는 조세법보로 기업자문센터(02-6363-6565)로 상담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법보 기업자문센터 웹사이트(http://tax.joseilb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준수 한생한 스타세무 세무사무에 자문에 무사

박명원
스타프라임세무회계
기업컨설팅 전문가

명의신탁, 믿었던 가족에 발등 찍히지 않으려면

P 컨설팅하는 언젠은 기본으로 하동을 보내고 있다. 이는의 많은 아니기만 해도 한 참관은 D 대표의 에기가 아무생에서 이나이 많기 때문이다.

D 대표는 2000년 초에 많주에 부동소 재업체인 OOO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 기반 수 제한사항이 많았던 때에서 관인 의 D 대표 아버님 이종상 그리고 처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였다. 주식발행 비율은 30% : 10% : 30% : 30%이었다. D 대표는 그 안의 사업부서 실제경영을 맡아 가지고 있다.

그러한 D 대표에게 6년 전부터는 모하여 지원했다. 그 전에 하던 사업은 2년정 분기도 안에 망했고, 3년이기를 맞아서는 경영부터 여러 어긴이 발생하고, 힘사키 포동소는 시기에 D 대표도 직급의 OOO 회사로 다시 시작하였고 이제는 D 대표는 이스의 여기 실제 에서 보증을 받아 총 11 지일한 관리 같에 세법제 부분으로 회사로 다시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업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렇다면 D 대표는 지금 회사 성장 당시의 한인 이스로 회사 경영권을 어떻게 유지할것인가.

이로 제안을 해준이다. D 대표가 실제업체에서 운신한 주요인이 되어주었던 이 동생이었기에 회사 실제감사에 관여수이었다. 주식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에 본 담인적 회사이 성장을 수혜 제외생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개선의 노력도 무용지물 관계는 회복해서 회사으로 지장에 보관서 같은 것이 이유였던 경영권을 지키기 가기 쉬고 있다.

P 컨설팅하는 이러한 상황을 감로 기본이 나빠진 것이다. 오해발생한 안내존 D 대표는 그러였지 않다고 시장이었다. 나 이러한 감성적로 생명적으로 실행 실업고, 회사를 위해서 많하나에 명의신탁주식인으로 인하여 또 한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D 대표가 빈틈 타고 다시 실패하지면 이제는 책기할 수 없다는 것을 P 컨설팅하는 이유 일 일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보급해는 것 만이오도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1. 명의수세자의 변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및 명의수세 사실 부인 위험 존재
2. 명의수세자의 사망 명의수세자의 상속인에 의한 주식 환수 위험 존재
3. 명의수세자의 신용위험 명의수세자가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주식을 압류 당할 수 있음
4. 명의수세주식 처분 명의수세자 임의 처분할 경우 기업성격 이 바뀌을을 원적 될 처분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능동수세 회사가지 강성에 따라 증가적, 입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납부할 세무서 이익,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과한 금액의 배상이 주장 당할 수 있다. 이들세 명의 수세자 양도로부터 5년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D 대표의 경우 이동생의 변심우려는 위험을 최고 있다. 이에 D대표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주 확인제도를 활용하고 자 명의신탁주식의 필기능하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할경우 D대표가 양도소득세 부과 확인조항서와 넘겨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해야가 가능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능동수적 위험은 가중되지 D대표의 가장 큰 위험은 경영권 박탈이다.

P 컨설팅하는 인사업은 많도 해도가 해 등 유상증자 등 D대표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D대표와 같은 유형을 가진 주식명의신탁은 실제주식이 대외에서가 없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우선순위인 전제일 하은 경영이 되는 P 컨설팅이 필 같은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일 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을 찾아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에 관하여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CEO는 조세법보로 기업자문센터(02-6363-6565)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법보 기업자문센터 웹사이트(http://tax.joseilb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준수 한생한 스타세무 세무사무에 자문에 무사

정연조
스타프라임세무회계
기업컨설팅전문가